

2025년도 세입.세출 예산(안)

옥천군장애인복지관

[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이용시설, 장애인활동지원사업]



옥천군장애인복지관

[[예산총칙]]

제 1조 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4,326,906천원으로 한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|--|
| 합 계 | | 4,326,906 | | |
| 장애인 복지관 | 복지관 | 2,765,699 | | |
| | 주간이용시설 | 279,500 | | |
| | 장애인활동지원 | 1,281,707 | | |
| | | | | |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.세출 예산

* 옥천군장애인복지관

(단위 : 천원)

| | | 세 입 | | | | | | 세 출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기관별 | 계 | 보조금수입 | | 후원금수입 | | 자체부담금 | | 계 | 사무비 | | 재산조성비 | | 사업비 | | 잡지출 | | 예비비및기타 | | |
| | | 금액 | % | 금액 | % | 금액 | % | | 금액 | % | 금액 | % | 금액 | % | 금액 | % | 금액 | % | |
| 총 계 | 4,326,906 | 2,716,899 | 62.8 | 52,600 | 1.2 | 1,557,407 | 36.0 | 4,326,906 | 3,059,087 | 70.7 | 62,000 | 1.4 | 1,149,969 | 26.6 | 1,140 | 0.0 | 54,710 | 1.3 | |
| 장애인복지관 | 복지관 | 2,765,699 | 2,482,129 | 89.7 | 52,600 | 1.9 | 230,970 | 8.4 | 2,765,699 | 1,669,110 | 60.4 | 24,500 | 0.9 | 1,036,489 | 37.5 | 1,000 | 0.0 | 34,600 | 1.3 |
| | 주간이용시설 | 279,500 | 234,770 | 84.0 | 0 | 0.0 | 44,730 | 16.0 | 279,500 | 226,370 | 81.0 | 6,500 | 2.3 | 26,480 | 9.5 | 40 | 0.0 | 20,110 | 7.2 |
| | 활동지원사업 | 1,281,707 | 0 | 0.0 | 0 | 0.0 | 1,281,707 | 100.0 | 1,281,707 | 1,163,607 | 90.8 | 31,000 | 2.4 | 87,000 | 6.8 | 100 | 0.0 | 0 | 0.0 |

2025년도 세입.세출 예산(안)

장애인복지관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2025년도 세입.세출 예산(안)

장애인복지관

세입 예산액 2,765,699천원

세출 예산액 2,765,699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[[예 산 총 칙]]

제 1조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2,765,699천원으로 한다.

(단위 : 천원)

| |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|
| 세입 | 계 | 2,765,699 | 세출 | 계 | 2,765,699 |
| | 사업수입 | 152,900 | | 사무비 | 1,669,110 |
| | 보조금수입 | 2,482,129 | | 재산조성비 | 24,500 |
| | 후원금수입 | 52,600 | | 사업비 | 1,036,489 |
| | 전입금 | 5,000 | | 잡지출 | 1,000 |
| | 이월금 | 72,070 | | 예비비및기타 | 34,600 |
| | 잡수입 | 1,000 | | | |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2025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| 세 입 | | | | | 세 출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관 항 목 | 2024년 예산 (A) | 2025년 예산 (B) | 증 감(B-A) | | 관 항 목 | 2024년 예산 (A) | 2025년 예산 (B) | 증 감(B-A) | |
| | | | 금액 | 비율(%) | | | | 금액 | 비율(%) |
| 합 계 | 2,999,698 | 2,765,699 | △233,999 | △7.8 | 합 계 | 2,999,698 | 2,765,699 | △233,999 | △7.8 |
| 01 사업수입 | 60,600 | 152,900 | 92,300 | 152.3 | 01 사무비 | 1,618,103 | 1,669,110 | 51,007 | 3.2 |
| 02 보조금수입 | 2,703,614 | 2,482,129 | △221,485 | △8.2 | 02 재산조성비 | 25,900 | 24,500 | △1,400 | △5.4 |
| 03 후원금수입 | 87,710 | 52,600 | △35,110 | △40.0 | 03 사업비 | 1,272,184 | 1,036,489 | △235,695 | △18.5 |
| 04 전입금 | 5,000 | 5,000 | 0 | 0.0 | 04 잡지출 | 12,798 | 1,000 | △11,798 | △92.2 |
| 05 이월금 | 140,184 | 72,070 | △68,114 | △48.6 | 05 예비비및기타 | 70,713 | 34,600 | △36,113 | △51.1 |
| 06 잡수입 | 2,590 | 1,000 | △1,590 | △61.4 | | | | | |

2025년도 세입. 세출 예산(안)

장애인주간이용시설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2025년도 세입. 세출 예산(안)

장애인주간이용시설

세입 예산액 279,500천원

세출 예산액 279,500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[[예산총칙]]

제 1조 2025년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279,500천원으로 한다.

(단위 : 천원)

| | | | | |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
| 세입 | 계 | 279,500 | 세출 | 계 | 279,500 |
| | 사업수입 | 14,400 | | 사무비 | 226,370 |
| | 보조금수입 | 234,770 | | 재산조성비 | 6,500 |
| | 이월금 | 30,290 | | 사업비 | 26,480 |
| | 잡수입 | 40 | | 잡지출 | 40 |
| | | | | 예비비및기타 | 20,110 |
| | | | | | |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2025년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| 세 입 | | | | | 세 출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관 항 목 | 2024년예산 (A) | 2025년예산 (B) | 증 감(B-A) | | 관 항 목 | 2024년예산 (A) | 2025년예산 (B) | 증 감(B-A) | |
| | | | 금액 | 비율(%) | | | | 금액 | 비율(%) |
| 합 계 | 282,183 | 279,500 | △2,683 | △1.0 | 합 계 | 282,183 | 279,500 | △2,683 | △1.0 |
| 01 사업수입 | 14,400 | 14,400 | 0 | 0.0 | 01 사무비 | 220,590 | 226,370 | 5,780 | 2.6 |
| 02 보조금수입 | 228,990 | 234,770 | 5,780 | 2.5 | 02 재산조성비 | 8,200 | 6,500 | △1,700 | △20.7 |
| 03 이 월 금 | 38,703 | 30,290 | △8,413 | △21.7 | 03 사업비 | 26,040 | 26,480 | 440 | 1.7 |
| 04 잡 수 입 | 90 | 40 | △50 | △55.6 | 04 잡지출 | 229 | 40 | △189 | △82.5 |
| | | | | | 05 예비비및기타 | 27,124 | 20,110 | △7,014 | △25.9 |

2025년도 세입. 세출 예산(안)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2025년도 세입. 세출 예산(안)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세입 예산액 1,281,707천원

세출 예산액 1,281,707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목천군장애인복지관

[[예산총칙]]

제 1조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1,281,707천원으로 한다.

(단위 : 천원)

| | 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|
| 세입 | 계 | 1,281,707 | 세출 | 계 | 1,281,707 |
| | 사업수입 | 1,131,607 | | 사무비 | 1,163,607 |
| | 이월금 | 150,000 | | 재산조성비 | 31,000 |
| | 잡수입 | 100 | | 사업비 | 87,000 |
| | | | | 잡지출 | 100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 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| 세 입 | | | | | 세 출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관 항 목 | 2024년예산 (A) | 2025년예산 (B) | 증 감(B-A) | | 관 항 목 | 2024년예산 (A) | 2025년예산 (B) | 증 감(B-A) | |
| | | | 금액 | 비율(%) | | | | 금액 | 비율(%) |
| 합 계 | 1,208,357 | 1,281,707 | 73,350 | 6.1 | 합 계 | 1,208,357 | 1,281,707 | 73,350 | 6.1 |
| 01 사업수입 | 1,086,424 | 1,131,607 | 45,183 | 4.2 | 01 사무비 | 1,092,264 | 1,163,607 | 71,343 | 6.5 |
| 02 이 월 금 | 121,833 | 150,000 | 28,167 | 23.1 | 02 재산조성비 | 32,000 | 31,000 | △1,000 | △3.1 |
| 03 잡 수 입 | 100 | 100 | 0 | 0.0 | 03 사업비 | 84,000 | 87,000 | 3,000 | 3.6 |
| | | | | | 04 잡지출 | 93 | 100 | 7 | 7.5 |